

1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을 통해 농산물 품질관리 및 상품성 제고 -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영농(벼) 영농환경 개선 -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 농촌경관 및 농촌 주거환경 질적 향상 - 도시민 유치촉진으로 농촌활성화
	사업내용	저온저장고 신규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곡물건조기 지원(설치는 자부담)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지원(국비, 지방비)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 제6항, 제67조, 제108조
	증빙서류	지원대상자 확인증 자치단체(읍·면·동)장 발급	지원대상자 확인증 자치단체(읍·면·동)장 발급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감면내용	감면근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감면율	해당연도 수수료의 30%		
	감면필요성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	제한사항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소급적용 불가)
	전년실적	‘21년 380건 / 659필 / 0.9억 원 감면 (‘11년부터 지속추진 중)		
		‘21년 3,292건/ 8.0억 원 감면 (‘14년부터 지속추진 중)		

감면업무명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개 요	감면목적	○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감면내용	○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 년도 수수료의 90%~50% 까지 할인 - 3개월 이내 재의뢰: 90% 감면 - 6개월 이내 재의뢰: 70% 감면 - 12개월 이내 재의뢰: 50% 감면
	제한사항	○ 동일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감면 ○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측량은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에 대하여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 우에 한하며 시·군·구별 선지정(130%) 현황측량 기본단가를 기준으로 함
감 면 내 용	감면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
	감면율	○ 해당연도 수수료의 90%~50%
	감면 필요성	○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전년실적	○ '21년 9,241건 / 11,299필 / 61.7억 원 감면(90%_33.7억 원, 70%_14.9억 원, 50%_13.1억 원) (‘17년부터 추진)_경계복원할인제도

감면업무명		국가유공자	장애인
개 요	감면목적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을 통한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임성 제고
	감면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 감면	○ 장애인이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 감면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 단, 같은 법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수훈자와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 제7급은 제외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유족또는가족) 확인서(증, 카드), 독립유공자(유족또는가족) 확인서(증, 카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제한사항	○ 대상자 본인 소유의 토지를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감면 - 제3자가 대상자의 위임장 제출 시 감면 가능하며, 제3자의 토지를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감면 불가	
감 면 내 용	감면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	
	감면율	○ 해당연도 수수료의 30%	
	전년실적	○ '21년 6,633건 / 11,179필 / 20.0억 원 감면(국가유공자_14.0억 원, 장애인_6.0억 원) (‘17년부터 추진)	

감면업무명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 서비스 제도
개 요	감면목적	○ 고객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감면내용	○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기본 1필지 30% 공제) 후 1년 이내 재 의뢰시 기존 공제 금액 할인
	제한사항	○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하여 재의뢰 하는 경우만 감면 ○ 대국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반업무 중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에 적용
감 면 내 용	감면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
	감면율	○ 기존 공제 금액 감면(종목별 기본단가의 30%)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감면 필요성	○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전년실적	○ '21년 140건 / 250필 / 0.2억 원 감면 ('19년부터 추진)